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국)

2025. 12. 9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제출일자: 2025. 11. 18.(화)
- 회부일자: 2025. 11. 19.(수)
- 검토기간: 2025. 11. 19.(수) - 11. 26.(수)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3. 편성방향

- 총액한도제 관련 경비는 전년도 편성기준 대비 2.1%(10,262천원) 증가
 -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회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등 4개 통계목
- 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비 등 예산 반영
-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원 채용에 따른 보수 예산 반영

4.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해당 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예산	2025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5,057,067	4,705,943	351,124	7.5%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	2,242,454	2,162,578	79,876	3.7%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1,846,337	1,757,219	89,118	5%
합리적인 인사행정	6,914	7,682	△768	△9.9%
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	389,203	397,677	△8,474	△2.1%
행정운영경비	2,814,613	2,543,365	271,248	10.7%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2,704,363	2,443,973	260,390	10.6%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10,250	99,392	10,858	10.9%

□ 주요 사업 증·감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2026년도 예산	2025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의원 PC 한글프로그램 구입(24식)	6,201	-	6,201	신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참가비(1인)	1,300	-	1,300	신규
의회 방송실 환경개선	21,000	-	21,000	신규
본회의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91,250	-	91,250	신규
카메라 장비구입	13,000	-	13,000	신규
성과상여금	53,084	-	53,084	신규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사진 및 영상)	52,383	-	52,383	신규
공무출장을 위한 대구로택시(비즈) 사용료	1,438	-	1,438	신규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여비)	14,386	17,280	△2,894	△16.8%
부속실 대기의자 구입(1개)	620	-	620	신규

- ※ 현재 의원 PC 한글(2010)은 직원 PC 한글(2020/2024)과 호환이 어려움.
- ※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역정책연구포럼 회원가입 및 교육비(1인 연회비)
 - 연회비 1인당 130만원 정도(강사료, 교재비, 만찬비 포함), 3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 매월 3째주 수요일 14:00-18:00(만찬 포함), 월 1회 참여시 교육훈련이수 3시간 인정
 - 중앙부처 정책책임자와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인구정책 전략 등 우수사례 공유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및 노후된 방송실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총괄과-333, 2025. 3. 18) 기초의회 회의중개 및 공개규정 마련
- ※ 카메라 내구연한(7년, 2017년 구입)이 만료됨에 따라 카메라 장비 구입
- ※ 의회전입자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업무실적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2025년 대상자 12명(6급 6명, 7급 4명, 8급 2명)
 - 의회파견자에 대해서는 원소속기관 지급대상으로 집행부에서 평가 및 지급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사진 및 영상촬영) 신규임용
 - 2025년 9월 22일 채용. 2025년 제2차 추경에 23,760천원(임금 4월분) 반영
- ※ 공무출장을 위한 대구로택시(비즈) 사용료, 기본업무추진여비(국내여비)의 10% 책정
 - 2025년 제1차 추경에 기본업무추진여비(국내여비)의 10%인 1,728천원 반영
- ※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10% 예산 절감

5. 검토의견

- 달서구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50억 5,706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112만원(7.5%)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변동 내역으로 인력운영비 2억 6,039만원(10.6%) 증액, 의회발전 교육 및 교류 847만원(2.1%) 감액함. 개별사업별로는 의회방송실 환경개선 2,100만원, 본회의 실시간 중계시스템 9,125만원, 카메라 장비구입 1,300만원, 성과상여금 5,308만원 등을 신규편성하고, 의회직원교육비 22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8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출장을 위한 대구로택시(비즈) 사용료 143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번 예산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배치, 시설 개선, 노후 장비의 교체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집행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하고, 조기집행을 통해 미집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와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대 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전전년도 7월 대비 전년도 7월 소비자물가등락률(출처 KOSIS, 소비자물가조사): 2.1%

→ 2026년 총액한도: 388,083천 원('25년 380,101천원의 2.1%, 10,262천원 증액)

▣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

○ 국외여비

(단위: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3,088 1인기준: 2,885	86,256 1인기준: 2,995	100,800 1인기준: 3,500	103,397 1인기준: 3,590	105,583 1인기준: 3,666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단위: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9,296 1인기준: 804	20,040 1인기준: 835	20,400 1인기준: 850	20,880 1인기준: 870	21,360 1인기준: 890

○ 의정운영공통경비

(단위: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53,801	159,414	150,585	154,608	157,796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93,075)	2023년 (96,425)	2024년 (98,684)	2025년 (101,216)	2026년 (103,344)
의 장	31,202	32,325	33,072	33,924	34,644
부 의 장	14,892	15,428	15,792	16,200	16,548
운영위원장	10,637	11,020	11,280	11,568	11,808
기획행정위원장	10,637	11,020	11,280	11,568	11,808
복지문화위원장	10,637	11,020	11,280	11,568	11,808
도시환경위원장	10,637	11,020	11,280	11,568	11,80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433	4,592	4,700	4,820	4,92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